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973 발의연월일: 2025. 3. 17.

발 의 자:이만희·서천호·박충권

엄태영 · 김기웅 · 김소희

구자근 • 이상휘 • 이종배

권영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민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한 경우 해당 저축의 이자소득 및 저축장려금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농어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비과세 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어민의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7조의2).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7조의2(농어가목돈마런저축에	제87조의2(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농어민이 「농어	대한 비과세)
가목돈마런저축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농어가목돈마런저축에	
<u>2025년 12월 31일</u> 까지 가입한	<u>2028년 12월 31일</u>
경우 해당 농어민 또는 그 상	
속인이 저축계약기간이 만료되	
거나 가입일부터 1년 이후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로 저축을 해지하여	
받는 이자소득과 저축장려금에	
대해서는 소득세・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